

■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생략></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0조 <생략></p> <p>제21조(면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5~3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좌동></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④ <좌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0조 <좌동></p> <p>제21조(면책)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5~31조 <좌동></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시행일 변경</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1~2조 <생략></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1~4. <생략></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9. <생략></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제1~2조 <좌동></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1~4. <좌동></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9. <좌동></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대상 확대</p>
대상	판단기준	대상	판단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② <생략> 제4~5조 <생략>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		② <좌동> 제4~5조 <좌동>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22조 <생략>		제1~22조 <좌동>		
제23조(면책)		제23조(면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 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32조 <생략>		제22~32조 <좌동>		시행일 변경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현행	개정	개정사유																				
<p>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4. <생략></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8. <생략></p> <p>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4. <좌동></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8. <좌동></p> <p>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공익적 목적을 위한사회적기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대상 확대</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신설>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대상	판단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생략></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0조 <생략></p> <p>제21조(면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2~3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좌동></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④ <좌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0조 <좌동></p> <p>제21조(면책)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2~31조 <좌동></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2조 <좌동></p>	<p>시행일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37 633 676 1256"> <thead> <tr> <th>적립금자산 평가액</th> <th>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h>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u>0.08%</u>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u></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td> </tr> </tbody> </table> <p>3의2~4. <생략>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9. <생략> ② <생략> 제4~5조 <생략></p> <p>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u>0.08%</u>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u>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2. <좌동>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40 633 1279 1301"> <thead> <tr> <th>적립금자산 평가액</th> <th>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h>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u>0.06%</u>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u></td> </tr> </tbody> </table> <p>3의2~4. <좌동>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9. <좌동> ② <좌동> 제4~5조 <좌동></p> <p>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u>계약서 사본 교부</u>).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u>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u>).</p>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u>0.06%</u>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u>	<p>개인적립금 부담 부분에 대한 수수료 인하</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u>0.08%</u>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u>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u>0.06%</u>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u>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22조 <생략></p> <p>제23조(면책)</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신설></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22조 <좌동></p> <p>제23조(면책)</p> <p>① <좌동></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제24~3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4~3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시행일 변경</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4. <생략></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9. <생략></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4. <좌동></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9. <좌동></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③ <생략></p> <p>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③ <좌동></p> <p>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4조 <생략></p> <p>제15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신설></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6~25조 <생략></p> <p>제26조(면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신설></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7~3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4조 <좌동></p> <p>제15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6~25조 <좌동></p> <p>제26조(면책)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7~37조 <좌동></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개정일 변경</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1~2조 <생략></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13 495 687 994"> <thead> <tr> <th>적립금자산 평가액</th> <th>수수료율(연)</th> </tr> </thead> <tbody> <tr> <td>~ 10억원 미만</td> <td>0.40%</td> </tr> <tr> <td>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td> <td>0.35%</td> </tr> <tr> <td>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td> <td>0.30%</td> </tr> <tr> <td>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td> <td>0.26%</td> </tr> <tr> <td>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td> <td>0.23%</td> </tr> <tr> <td>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td> <td>0.22%</td> </tr> <tr> <td>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td> <td>0.18%</td> </tr> <tr> <td>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td> <td>0.10%</td> </tr> <tr> <td>2,000억원 이상</td> <td>0.07%</td> </tr> </tbody> </table> <p>4. <생략></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8. <생략></p> <p>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13 1861 687 2033">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u><신설></u>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u><신설></u>기업</td> </tr> </tbody> </table>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0.10%	2,000억원 이상	0.07%	대상	판단기준	<u><신설></u>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u><신설></u> 기업	<p>제1~2조 <좌동></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1~2. <좌동></p> <p>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19 495 1294 994"> <thead> <tr> <th>적립금자산 평가액</th> <th>수수료율(연)</th> </tr> </thead> <tbody> <tr> <td>~ 10억원 미만</td> <td>0.40%</td> </tr> <tr> <td>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td> <td>0.35%</td> </tr> <tr> <td>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td> <td>0.30%</td> </tr> <tr> <td>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td> <td>0.26%</td> </tr> <tr> <td>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td> <td>0.23%</td> </tr> <tr> <td>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td> <td>0.22%</td> </tr> <tr> <td>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td> <td>0.18%</td> </tr> <tr> <td>1,000억원 이상 ~ <u><삭제></u></td> <td><u>0.07%</u></td> </tr> <tr> <td><u><삭제></u></td> <td><u><삭제></u></td> </tr> </tbody> </table> <p>4. <좌동></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8. <좌동></p> <p>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19 1861 1294 2033">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u>(예비)</u>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u>(예비)사회적기업</u></td> </tr> </tbody> </table>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u><삭제></u>	<u>0.07%</u>	<u><삭제></u>	<u><삭제></u>	대상	판단기준	<u>(예비)</u>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u>(예비)사회적기업</u>	<p>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대상 확대</p>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0.10%																																																	
2,000억원 이상	0.07%																																																	
대상	판단기준																																																	
<u><신설></u>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u><신설></u> 기업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u><삭제></u>	<u>0.07%</u>																																																	
<u><삭제></u>	<u><삭제></u>																																																	
대상	판단기준																																																	
<u>(예비)</u>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u>(예비)사회적기업</u>																																																	

현행		개정		개정사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② <생략>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7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신설>)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신설>)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

② <좌동>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7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

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생략>	원본 1부 교부 .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좌동>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25조 <생략></p> <p>제26조(면책)</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7~3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3. <생략></p>	<p>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25조 <좌동></p> <p>제26조(면책)</p> <p>① <좌동></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7~3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3. <좌동></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시행일 변경</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4~6. <생략></p> <p>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4~6. <좌동></p> <p>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공익적 목적을 위한사회적기업, 장기요양기관에 수수료 할인대상 확대</p>
대상	판단기준	대상	판단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u>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u>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3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생략></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3조 <생략></p> <p>제24조(면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5~3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좌동></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3조 <좌동></p> <p>제24조(면책)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5~35조 <좌동></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시행일 변경</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1~2조 <생략></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1~4. <생략></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9. <생략></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제1~2조 <좌동></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1~4. <좌동></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9. <생략></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대상 확대</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신설>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것)</td> </tr> <tr> <td>사회복지시설</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것)</td> </tr> <tr> <td>사회복지시설</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대상	판단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신설>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② <생략>		② <좌동>		
제4조 <생략>		제4조 <좌동>		
<p>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p> <p>(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p>		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25조 <생략>	제1~25조 <좌동>	
제26조(면책)	제26조(면책)	
① <생략>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신설> 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7~3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3. <생략></p> <p>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4~7. <생략></p> <p>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13 1861 700 2033">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신설> 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신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p>제27~3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3. <좌동></p> <p>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4~7. <좌동></p> <p>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16 1850 1294 2033">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 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p>시행일 변경</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대상 확대</p>
대상	판단기준									
<신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신설> 기업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현행		개정		개정사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 받은 시설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 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p>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계약서 사본 교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원본 3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생략></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신설></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3조 <생략></p> <p>제24조(면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신설></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5~3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2조 <좌동></p> <p>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4~23조 <좌동></p> <p>제24조(면책)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5~35조 <좌동></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거래사고 유형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시행일 변경</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2조 <생략></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1~4. <생략></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5~9. <생략></p> <p>제4조 <생략></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신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신설>).</p>	<p>제1~2조 <좌동></p> <p>제3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1~4. <좌동></p> <p>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5~9. <좌동></p> <p>제4조 <좌동></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u>계약서 사본 교부</u>).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u>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u>).</p> <p>(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u>계약서 사본 교부</u>).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u>원본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u>).</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25조 <생략></p> <p>제26조(면책)</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25조 <좌동></p> <p>제26조(면책)</p> <p>① <좌동></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p>	<p>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신설></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7~3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생략></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3. <생략></p> <p>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하며, 하나는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4~7. <생략></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u><신설></u>).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u><신설></u>).</p>	<p>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27~3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좌동></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3. <좌동></p> <p>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u>합니다.</u></p> <p>4~7. <좌동></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u>계약서 사본 교부</u>).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u>원본 3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 교부</u>).</p>	<p>용거래사고 유형 추가</p> <p>시행일 변경</p> <p>1년미만 해지시 장기할인수수료 미적용 조항 삭제</p> <p>계약서 교부시 고객 선택 내용 명확화</p>